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3035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30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2805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김도훈, 이지용

피고, 피항소인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종남

변론종결 2021. 10. 26.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2805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장 제출을 통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